

제285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39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392 호
- 제 출 자 : 양순임 외 12인
- 제 출 일 : 2021. 10. 7.
- 회 부 일 : 2021. 10. 8.

2. 제안이유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성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하거나 지원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 제1조(목적) :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 제2조(정의) : 방연 마스크¹⁾, 안전교육(국민안전진흥기본법 제2조²⁾)

1)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된 마스크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나. 방연 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제3조(비치장소)

관련법령	대상시설	구체적 내용
「공공기관의 소 방안전관리에 관 한 규정」 제2조	공공기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1. 의원급 의료기관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	영유아보육 시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복지 시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 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예산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5조)

라. 홍보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제6조, 제9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하여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검토의견

○ 건축·구조물의 화재통계³⁾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단위 : 천원)
		계	사망	부상	
서울시	3,790	328	39	289	12,952,010
성북구	113	54	4	50	519,470

※ 기간 : 2020. 10. 9. ~ 2021. 10. 10.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지난 1년 동안의 건축·구조물에서의 화재건수는 서울시 전체의 경우는 3,790건이 발생하여 3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39명이 사망하였으며, 성북구의 경우에는 건축·구조물에서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 중에서 4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3)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화재통계 (2020.10.9. ~ 현재까지)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과 시설 등 공공의 영역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재정하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